
에너지기본계획 전기요금분야

2019. 1

I

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(전기요금 분야)

에너지 기본계획

[공급비용 적기반영] **전력도매가격 연동제**

[전기요금 현실화] **원가 기반 요금체계, 특례 축소·폐지**

[선택형 요금제] **녹색요금제 등 선택요금제 개발·적용**

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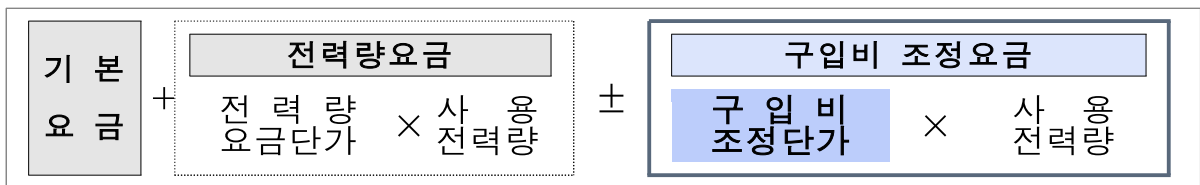
전력도매가격 연동제

□ 연동제 개요

- **(개 념)** 연료비, 정책비용 등 전력 도매가격* 변동요인을 전기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가격 시그널을 제공

* 전력 도매가격은 전기요금 원가의 84%('17년 기준)를 차지하는 요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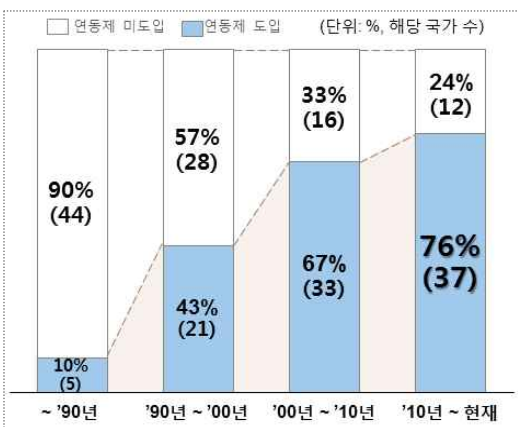
- **(기본구조)**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연동제 시행을 위해 전력구입비 조정요금을 별도 신설



- **(운영)** 정기적으로 조정단가를 조정하여 원가변동요인을 요금에 반영
- **(소비자 안전장치)** 전기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‘조정 범위 제한 + 조정상한 도입 + 유보제도 운영’

* 안전장치는 연동제 도입국 중 일부 국가(이스라엘, 일본, 중국 등)만 채택하여 운영중

□ 국내외 도입현황



- **(국내)** 가스요금('98년), 열요금('98년), 항공요금(화물 '03년, 여객 '05년) 도입
- **(해외)** 전력산업 성숙도가 낮거나 발전 자원이 풍부한 경우를 제외한 **대부분 나라에서 도입중** (GDP 상위 50개국 중 37개국, 74%)

* 미도입국가 : 멕시코, 핀란드, 노르웨이, 스위스, 사우디, 이란, 한국 등 13개국 (굵은 글씨 OECD 가입국)

농사용(을) 개편

□ 제도현황

- 농사용 요금은 영세농어민 지원을 위해 저렴한 수준으로 운영중 (전체 평균요금의 45%)이나, 낮은 요금으로 인해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를 대체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현상이 심화

< 2017년 종별 판매단가 및 판매증가율 >

계약종별	주택용	일반용	교육용	산업용	농사용	가로등	심야	전체
판매단가 (원/kWh)	108.50	130.42	103.07	107.41	49.09	113.48	67.48	109.53
증가율(%) ('08~'17년)	2.1	3.1	4.7	3.9	7.7	2.4	△4.0	3.2

□ 개편방향

- 농사용 요금 단계적 현실화, 기업농 대상 계약종별 신설 검토

특례할인제도 개편

□ 개편 필요성

- **(일몰기한 부재)** 특례할인 한시적 운영 취지와 달리 종료기한이 없는 할인제도로 인해 할인금액이 매년 증가하여 재무여건 지속 악화
* 종료기한 미설정 특례요금(4,884억)이 전체(5,810억)의 84.1% 점유
- **(형평성 논란)** 고소득 1인가구의 필수보장공제 무임승차,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ESS 할인제도 등 도입 취지 왜곡

□ 개편방향

- 추가적인 제도 신설 억제, 일몰기한이 있는 제도는 종료기한 도래시 폐지, 일몰기한이 없는 제도는 일몰기한 설정후 폐지 추진

IV

녹색요금제 도입

□ 개 념

-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생산된 전력을 기존 요금보다 높은 가격(그린 프리미엄)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선택적 요금제도
- 소비자 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목적으로 도입

□ 주요국 도입배경

- RPS, FIT 등 공급측면의 제도와 병행 가능한 수요측면의 제도로, 신재생 산업 투자 등 시장 잠재력을 확대를 위해 도입
- 환경의 중요성 부각, RE100*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기제 요구 확산 * 사용전력 100%를 녹색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
- (한국)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확대 필요

□ 주요국 운영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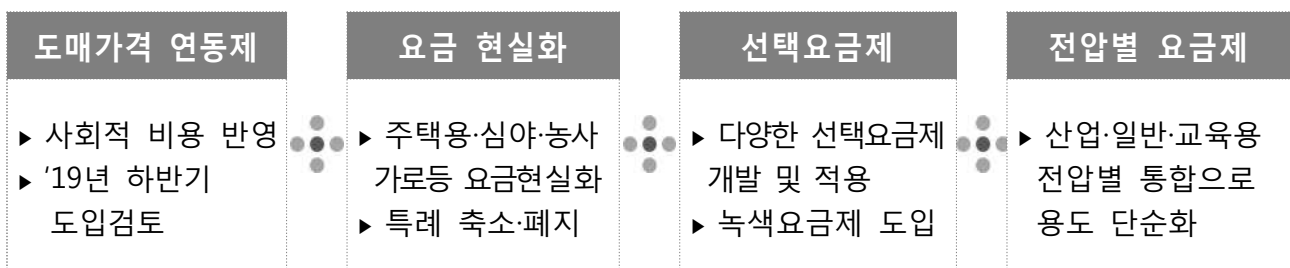
- 미국, 독일 : 활발한 Green Pricing 도입, 자발적 시장 정착
- 영국, 호주 : Green Pricing보다는 다양한 신재생보급정책이 우세

V

전기요금 체계개편 로드맵 수립

□ 권 고 안 : '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

□ 추진내용



원가에 기반한 합리적 요금체계 확립으로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